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
개정조례(안)심사보고서

1992. 10. 21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2. 10. 13.
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1992. 10. 16.
- 다. 상정일자 : 제12회입시회 제2차위원회('92.10.21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석봉 총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내무부의 기능직지방공무원 등급조정계획에 의거 일부직렬, 직류의 등급이 서울특별시로 부터 조정 시달되었기 개정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9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타자) 1명 증 (등급조정)
-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타자) 1명 감
- 9등급 지방방호원(방호) 1명 증(등급조정)
- 10등급 지방방호원(방호) 1명 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김현기)

내무부의 기능직지방공무원 등급 조정계획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전체정원의 변동없이, 정원의 직급을 세분화하는 것으로서 특이사항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요지(운동현위원) :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원은
- 답변요지(김석봉총무과장) : 정원은 29명이고 현원은 26명이며 부족인원 3명은 현재 채용하여 수습중인 방호원1명과 운전원1명, 비서1명임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
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출일자 : 1992. 10.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○ 개정이유

· 내무부의 기능직지방공무원 등급조정계획에 의거 일부직렬·직류의 등급이 서울특별시로 부터 조정시달되었기 개정코자 함.

○ 주요골자

- 9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타자) 1명 증 (등급조정)
-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타자) 1명 감
- 9등급 지방방호원(방호) 1명 증(등급조정)
- 10등급 지방방호원(방호) 1명 감

○ 근거법령

· 지방자치법 제83조1항

○ 개정안 : 별첨

○ 친구조문대비표 : 별첨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
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(별표) 중 기능직 9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타자)1명, 기능직9등급지방방호원(방호) 1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10등급지방사무보조원(타자)2명을 1명으로 하고 기능직 10등급지방방호원(방호)2명을 1명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(안)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직원정원표	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직원정원표
○ 별정직	○ 별정직
- 비서(7급상당) 1명	- (현행과 같음)
- 비서(9급상당) 1명	- (현행과 같음)
○ 별정직 또는 일반직	○ 별정직 또는 일반직
-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..... 2명	- (현행과 같음)
○ 일반직	○ 일반직
- 지방서기관..... 1명	- (현행과 같음)
- 지방행정주사..... 3명	- (현행과 같음)
- 지방행정주사보..... 3명	- (현행과 같음)
- 지방행정서기..... 3명	- (현행과 같음)
- 지방행정서기보..... 2명	- (현행과 같음)
○ 기능직	○ 기능직
- 8등급지방사무보조원(필기-속기) 2명	- 8등급지방사무보조원(필기-속기) -(현행과 같음)
- 10등급지방사무보조원(필기-속기) 2명	- 10등급지방사무보조원(필기-속기) -(현행과 같음)
- 8등급지방기계원또는지방전기원 2명	- 8등급지방기계원또는지방전기원 -(현행과 같음)
- 9등급지방사무보조원(필기-행보) 1명	- 9등급지방사무보조원(필기-행보) -(현행과 같음)
- 10등급지방사무보조원(타자) 2명	- 9등급지방사무보조원(타자) 1명
- 10등급지방방호원(방호) 2명	- 10등급지방사무보조원(타자)..... 1명
- 10등급지방방호원(방호) 2명	- 9등급지방방호원(방호) 1명
- 10등급지방방호원(방호) 2명	- 10등급지방방호원(방호) 1명
- 10등급지방운전원 2명	- 10등급지방운전원 2명